

2023년 중소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

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「2023년 성실경영평가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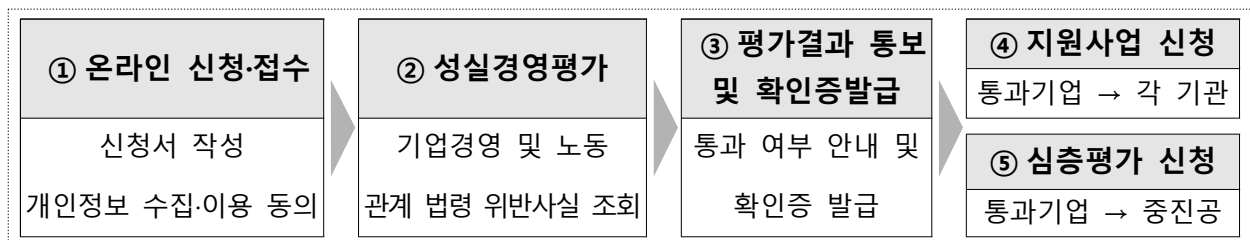
① 사업목적

-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
- 재창업 전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

* 근거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(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)

** 재정지원 : 재창업자금(중진공), 재도전성공패키지(창진원) 등

② 사업절차



- ① **온라인 신청·접수**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(www.rechallenge.or.kr)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 완료
- ② **성실경영평가** 과거 기업경영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성실경영평가 진행
- ③ **평가결과 통보** 성실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통과자에 대해 별도의 확인증을 발급
- ④ **지원사업 신청** 통과자는 각 기관별 재창업 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, 각 기관별 공고일자에 따라 별도 신청*
 - *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, 각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됨
- ⑤ **심층평가 신청** 통과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(www.rechallenge.or.kr)를 통해 심층평가 신청

2. 신청대상 및 사업내용

1 신청대상

- (성실경영평가)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
 - * 단, 예비재창업자의 경우, 성실경영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'재창업(법인등기·사업자등록)' 또는 '재창업 지원사업 신청' 필수 이행(미이행시 평가결과 실효)
- < 신청 제한 >**

 - 재창업 업종이 '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)'에 해당하는 경우
 - *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
- (성실경영 심층평가) 유효기간 內 성실경영평가 통과자

2 사업내용

- (성실경영평가) 재창업 전 기업 경영,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, 재기기업인 과세특례(조특법 제99조의6, 제99조의8)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

< 재창업 지원사업 >

- [중진공] 재창업자금
- [창진원] 재도전성공패키지
- [신·기보] 재창업자금-신복위
- [지자체]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등

*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재창업 지원사업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

- (성실경영 심층평가) 폐업 전·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 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

<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주요 우대혜택 >

기 관	우대혜택 내용
중진공	■ 재창업자금 금리우대($\Delta 0.3\%$) 및 요건완화(저신용 조건 예외) ■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운영(신청권한 부여) ■ 재창업 특화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선정
창진원	■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
기보	■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시 '도덕성평가' 우대
SGI서울보증	■ 무담보 이행 및 인허가 우대보증 지원

*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재창업 지원사업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1 신청기간 : 연중 상시

2 신청방법 :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rechallenge.or.kr) 신청

※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온라인 신청 생략 가능

단, 기관별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성실경영평가 신청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

4. 평가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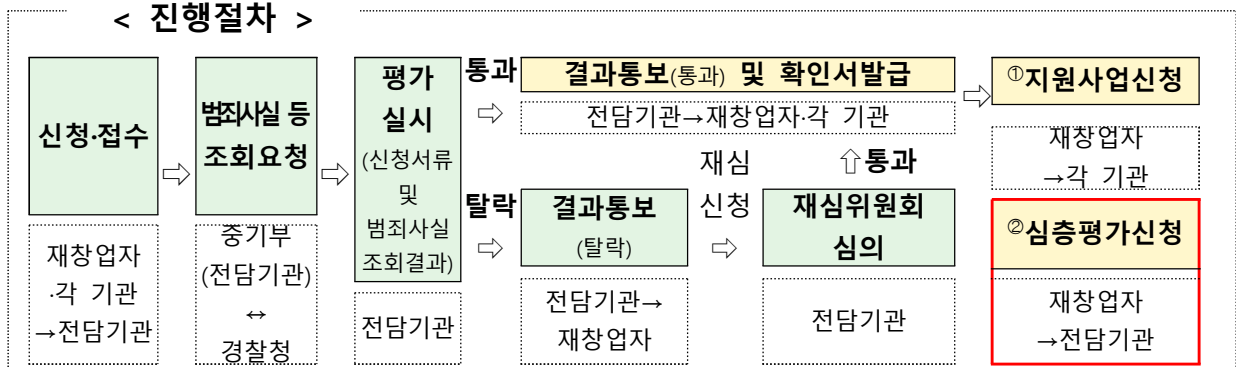
① 성실경영평가

- (평가방식) 서류 평가(비대면 방식)
- (평가내용) 재창업 전 기업 경영,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등
- (판정기준)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최소요건 충족 시, 통과
 - 통과자는 '성실경영자 확인증' 발급(통과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)
 - * 심의 탈락 시, 6개월 간 재신청 제한
 - **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시 성실경영평가 재심 진행

② 성실경영 심층평가

- (평가방식)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
- (평가내용) 폐업 전·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준비도 등 정성·정량평가
- (판정기준)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으로 판정 시, 통과
 - 통과기업에 대해 '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' 발급(통과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)
 - * 심의 탈락 시, 6개월 간 재신청 제한

< 진행절차 >



5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① 유의사항

-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온라인 신청 생략가능
-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은 중진공을 포함한 타기관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여되나,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해당 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됨(사업별 요건 사전확인 必)

② 문의처

기관	연락처(전화번호)	이메일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02-3211-5609	spt@kosmes.or.kr
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	02-3211-5610	

[붙임 1]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신청서

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신청서

재 창 업 기 업	업 체 명		대 표 자	
	사업자등록번호		주민등록번호	
	법인등록번호		실질경영주	
	주 사업내용		휴대폰번호	
	설립(예정)일자	년 월 일	FAX	
	주 소		E-mail	
폐 업 기 업	업 체 명		대 표 자	
	사업자등록번호		실질경영주	
	법인등록번호		설립일자	
	주 사업내용		폐업일자	
	폐업사유			
신청 목적 (1개 이상 필수선택)		☐ 재창업자금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☐ 재도전성공패키지(창업진흥원) ☐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(신용회복위원회) ☐ 지자체 재창업 지원사업(직접기재)() ☐ 기타(직접기재)()		
성실경영평가는 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요건일 뿐이며, 각 사업별로 정한 별도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. (□확인)				

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성실경영평가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(인)

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귀하

[붙임 2]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재심 신청서

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재심 신청서

업 체 현 황	업 체 명		대 표 자	
	사업자등록번호		탈락통보일	년 월 일
이의제기 사유		<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>		

※ 첨부서류: 필요 시 법원 판결문 등 증빙자료 제출

성실경영평가 탈락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(인)

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귀하

[붙임 3]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

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서

재 창 업 기 업	업 체 명			대 표 자			
	사업자등록번호			주민등록번호			
	법인등록번호			실질경영주			
	주 사업내용			휴대폰번호			
	설립(예정)일자	년	월	일	FAX		
	주 소			E-mail			
	매출 및 영업이익 (최근 3개년)	구분	20	년	20	년	20
	매출액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	
	영업이익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	
폐 업 기 업	업 체 명			대 표 자			
	사업자등록번호			실질경영주			
	법인등록번호			설립일자			
	주 사업내용			폐업일자			
	폐업사유						
성실경영평가 통과일		년 월 일					
성실경영 내용 * 주요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(선택사항)							
폐업전 실패방지 노력		※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노력, 적극적 영업활동 등					

잔존채무 변제	※ 부채 상환노력, 변제계획 승인 및 이행, 납세현황 등
고용관리 및 임금지불	※ 안전보건 관리, 임금·퇴직금 지불노력, 고용정리 과정 등
재기 준비도	※ 과거 실패원인 분석 타당성 및 신규사업 적용여부,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, 기술 응용 및 확장가능성 등

[붙임 4]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대상자	성명	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		
	주민등록번호	-	외국인인 경우: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	
	연락처	(휴대전화 등)		

본인은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위해 다음사항에 동의합니다.

- 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
-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제1항, 「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성실경영 평가 결과의 관계 기관 제공
- 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·이용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(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장) 귀하

유의사항

1.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)
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성실경영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재창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과 성실경영 평가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재창업지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.
4. 자료 제공 기관: 경찰청, 국세청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 제2항에 따라 성실경영평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